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79
------------	------

발의연월일 : 2017. 6. 29.

발의자 : 이양수 · 위성곤 · 이종배
이현승 · 김기선 · 이주영
권석창 · 박대출 · 이명수
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이며,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하지만, 고가의 선박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업은 선가(船價)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여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현재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반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 상황은 국내외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임. 이에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 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운용회사가 위탁받은 업무 중 주식발행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나. 선박운용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나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2조제1항).

다. 「상법」 제449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안 제47조제4호 삭제).

마. 선박운용회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없어도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바.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2 제2항 및 제4항 신설).

사.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안 제45조제3항 및 단서 신설, 안 제55조의2제1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받아야 한다”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제3호 · 제4호 · 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38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가”를 “위반하거나,”로,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을 “위반”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제3호를”을 “제29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을”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60조”를 “제61조”로,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를 “제86조, 제87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로,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를 “제18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제3호 · 제4호 · 제6
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
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
를 하는 경우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
한 특칙)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38조의 각 서류를 이
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
견이 있을 것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38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위 반하거나,-----

--위반--

----- . -----

----- 통보하여야 한다.

다면,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

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

회사가 아닌 경우) 또는 사모자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 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29조제1항제3호, 제30조제
2항을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
금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